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역할 재정립에 관한 소고

An Essay on Redefining the Role of State-Appointed Attorneys for Child Abuse Victims

윤 소 현*
Yun, Soh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재정립 |
| II.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특징 | V. 결어 |
| III. 현행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운영상의 문제 | |

국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의무가 있고, 아동학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건의 초동단계부터 종결 이후까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법상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로 나뉘어 있고, 사법적 대응체계 안에 있어서도 여러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각 절차개시의 요구권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검사를 사법적 대응체계의 주축으로 설정하고, 검사는 사건관리회의 등을 통하여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주체들까지 횡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대응체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 대응체계의 각 주체들, 그리고 사법적 대응체계 안에서도 개개의 절차의 주체들 사이에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 법률상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검사는 아동학대 외의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체계상 문제점, 객관의무에서 온 한계 등으로 소극적, 제한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 한편, 절차개시의 요청권자가 다수인 탓에 주된 책임주체가 모호

<https://doi.org/10.35148/ilsilr.2026..64.77>

투고일: 2026. 6. 26. / 심사완료일: 2026. 7. 14. / 게재확정일: 2026. 7. 16.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하여 상호 책임을 미루기 쉽고 해당 절차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권한행사 책임을 떠맡을 우려가 있다.

사실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을 살펴보면, 사법적 대응체계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검사 외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와 공판에서의 의견진술권, 포괄적 대리권, 각종 조치와 절차의 개시 요구권, 절차진행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한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막연히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동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 나아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와의 매개고리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처럼 사법적 대응체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거나 객관의무를 진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법적 대응체계의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이 상호 협력하여 매뉴얼, 법령의 정비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외 아동학대에 일관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주제어]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법률조력, 범죄피해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I. 서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게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이다. 특정범죄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조력권의 한 내용이자 피해자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변호인 조력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해서였다. 당시 주된 도입 취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증인신문시 2차 가해에 노출되기 쉬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수사·공판절차상의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특수성

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특수성은,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그리하여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대응체계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 대응체계가 작동한다. 또한 사법적 대응체계 안에서도 행위자의 재범방지, 성행 개선 및 원가정회복 등을 위한 특수한 절차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절차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심점 내지 매개고리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 사실 법률은 검사를 그러한 주체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나, 후술하듯이 검사는 객관의무 등으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실제로도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절차에서든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구심점 역할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먼저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의 특징(Ⅱ) 및 현행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운영상의 문제점(Ⅲ)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있어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재정립(Ⅳ)에 대하여 논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덧붙여 둘 것이 있다. 국선변호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선변호사에게도 당연히 법률에서 규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 및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동학대사건의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나 친지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에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결국 실무상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초점을 국선변호사에게 맞춘 이유도 이 때문이다.

II.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특징

1. 전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의무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의 국제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에 의하면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동 협약 제6조). 그리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동 협약 제19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동 협약 제3조).

아동복지법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국가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그리하여 국가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법상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먼저, 횡적으로 대응체계의 범위를 넓혔다. 행위자의 제재를 위한 사법적 대응체계 외에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복지행정적 대응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법적 대응체계 안에서도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음, 종적으로도 사건발생 초기부터 사건 종결 이후까지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은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속하는데, 관계성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반복되고 누적되는 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다.²⁾ 즉,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데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 또는 친지여서 피해아동 스스로가 그 관계를 단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1) 2024년 3월 기준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2) 이태린,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와 피해자의 긴장성 부동화 메커니즘 분석: 아동·가정·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경험에 관한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26, 39-41쪽 참조.

2.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

먼저, 사법적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 대응체계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주된 취지로 하나 피해아동 보호·지원도 아울러 고려한다. 사법적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주된 주체는 경찰, 검찰 및 법원이다.

사법적 대응체계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출동 및 조사를 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전건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³⁾ 제24조).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아동보호사건 송치(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를 하거나 형사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거나 송치한 사건을 받아 이를 처리한다.

한편, 사법적 대응체계 안의 또 다른 절차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친권상실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형사절차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민사절차이다.

다음으로, 복지행정적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이 대응체계는 행정기관이 행하므로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 절차는 크게 현장출동 및 조사를 하는 절차와 아동학대 사례 및 사후관리를 하는 절차로 나뉘고,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한다.⁴⁾

3. 사법적 대응체계의 특징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체계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절차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절차와 조치의 개시 요구권자로 복수의 주체를 규정한 경우가 많다. 셋째,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으로 일단 검사를 설정하고 있다.

3)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

4)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 업무, 즉 신고, 조사 절차 및 사례관리를 모두 수행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서 조사거부 등에 있어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2020년 개정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접수, 현장출동 등을 하고 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두도록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순수히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3.1 다양한 절차와 조치를 규정

전술한 것처럼,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의무, 아동학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법적 대응체계는 다양한 절차를 도입하고, 사건의 초동부터 종결까지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수사과정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긴급임시조치(동법 제13조) 및 임시조치(동법 제14조)가 있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현장출동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조치이다. 임시조치는 현장출동 이후에도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외에 친권상실(아동복지법 제18조)도 피해아동과 친권자를 분리시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격을 띤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보호사건처리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15장)은 행위자의 접근제한과 함께 행위자 내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상담 등의 처분을 규정하여 행위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고자 한다.

3.2 절차와 조치의 개시 요구권자를 복수로 규정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개시요구권을 가진 절차에 대하여 검사, 피해자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권한자로 규정한 경우가 다수 있다. 주요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아동학대처벌법상 각종 절차의 신청·청구권자

권한	조문	권한있는 자
사법경찰관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신청권	제13조 제1항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제14조 제2항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경우 등에 있어 법원에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	제22조 제4항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제50조 제3항).

권한	조문	권한있는 자
임시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가 있었어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제23조 제2항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결정 미이행등의 경우 보호처분 취소 청구권	제41조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보호처분 전부 또는 일부 종료 청구권	제42조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시 항고권	제45조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	제47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 신청권	제50조 제3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⁵⁾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의 연장 청구권	제51조 제1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⁶⁾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시 항고권	제57조 제1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조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기각에 대한 항고권	제57조 제2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⁷⁾

위 표를 살펴보면 절차개시의 요구권한을 가진 자가 복수이고, 특히 복지행정주체 들인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취지는 추측하건대 다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여러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혹시라도 있을 절차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학대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복지행정주체들인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권한을 부여하여 복지행정 대응체계와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결점을 마련하고 복지행정 주체들의 의견을 사법적 대응에 있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3 법률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을 검사로 설정

복수의 권한자를 규정한 취지는 절차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절차가 다양하고 권한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한 있는 기관이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갖고

6)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제51조 제2항).

7) 동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항고권 행사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57조 제3항).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극적, 회피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그러므로 주된 권한 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동법들은 검사에게 사법적 대응체계의 원칙적인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법적 대응체계에서 사건진행의 흐름에 따른 검사의 역할을 살펴보자.

초동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출동 종결 이후에도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청구도 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은 검찰에 전건송치된다. 그리고 검사가 1차적으로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검사는 상담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아동보호사건송치,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사건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는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각 조치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검사가 관여한다.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조건의 이행 점검 및 형사사건의 공소유지 절차는 검찰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항고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해당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내지 종료의 청구를 할 수도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한편, 검사는 이러한 형사사건 절차와는 별개의 민사절차인 친권상실신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적으로 절차 전체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횡적으로 법원을 제외한 사법적 대응체계에 속한 유관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검사가 임시조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변경 등의 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변경 등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보호처분결정으로 상담위탁 등을 맡은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현행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운영상의 문제

1.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체간의 협력 및 소통의 부족

앞서 본 것처럼 아동학대사건 대응체계는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제로 나뉘어지고, 전자는 주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후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대응체계는 단절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상호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첫째, 두 대응체계 모두 아동학대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 및 실체파악에 나선다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관련자의 기본권 제한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사법적 대응체계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보호를 일정 부분 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과 행위자 분리, 교육 등의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분리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출동 시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상호 통지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등(동법 제11조 참조) 양 주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법적 대응체계의 일부를 담당할 뿐이므로,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검찰, 법원을 포함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주체들과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주체들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검찰, 법원 등 실무상 양 대응체계 주체들간의 소통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사법적 대응체계 안의 협력도 원활한 편이 아니다.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을 맡는 경찰과 사건의 방향 결정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관리 등을 맡는 검찰청, 법무부 상호간은 각자 자신의 업무만을 할 뿐 공동 대응체계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맡는 법원(특히 가정법원)과 경찰, 검찰간의 소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검사의 제한적·소극적 역할 수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으로 검사를 설정하여 절차의 전반에 있어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사법적 대응체계에 관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아동학대사건에 적극적이고 전체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경찰이 신청하거나 송치한 사건의 후속처리에만 치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의 표에서 보듯이 아동보호사건의 처분결정 내지 불처분결정에 대해 검사는 변경 등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실무상 검사가 그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 내지 변경 청구를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가정법원에 송치하면 검사는 더 이상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뒤의 통계에서 보듯이 검사가 청구한 예는 찾기 어렵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도 그 개최 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⁸⁾ 그리하여 일선 실무자들 중에서는 아동학대 영역에서 검사는 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불만 섞인 견해를 표출하기도 한다.⁹⁾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첫째, 검사 업무체계상의 문제이다.¹⁰⁾ 검찰업무 특성상 한 명의 검사는 아동학대 외에 다양한 전담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수 개의 사건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아동학대사건을 종적, 횡적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검사의 법적 성격상의 문제이다. 검사는 본래 객관적 기관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 중 한쪽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8) 이태일리, “아동학대 사범 5년새 2.5배↑...법무부관리회의는 줄어[2024국감]”, 2024. 10. 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76646639053576&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4. 6. 25. 참조. 동 기사에 의하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약 2.5배 늘었으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줄었고, 참석자 현황,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9)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1)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350쪽의 담당 실무자 인터뷰 참조.

10)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위의 연구보고서, 352-353쪽도 동일한 취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능동적인 보호·지원에 있어 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3. 절차개시 요청권자가 다수로 인한 부작용

앞에서 보았듯이 아동학대처벌법은 다수의 절차에서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외에도 검사, 피해자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을 절차개시의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권한자를 복수로 설정하다보니 해당 절차를 요청하고 진행할 주된 책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주된 책임 주체가 모호하면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다른 기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권한행사를 방기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권한 행사에 있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절차진행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23년, 2024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자에 대한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내지 직권 건수

	판사직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변호사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아동본인	총건수
2024년	3	63	5	17	7	95
2023년	2	114	5	26	4	151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사법적 대응체계에 속하므로, 그 주축인 검사나 후술하는 피해자 변호사가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위 통계에 의하면 검사 청구건수는 0건이며, 변호사의 청구건수는 피해아동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건수보다도 더 적다. 사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이 절차에 관여하는 주된 주체는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복지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전체 건수의 거의 3분의 2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였다.

IV.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재정립

1. 최초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

피해자학(Victimology, Viktimologie)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통상 소극적·방어적 지위와 적극적·공격적 지위로 나눈다.¹¹⁾

피해자의 소극적·방어적 지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고인, 고소인, 증인 등으로 형사절차에 관련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관여하여 얻을 수 있는 피해는 보통 ‘2차 피해’라고 일컬어진다.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공격, 피해 사실에 대한 반복된 진술 강요, 피고인 등 가해자와 강제적인 대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주된 것이다.¹²⁾

한편 피해자의 적극적·공격적 지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형사절차 참여권을 말한다. 소극적·방어적 지위와 달리 피해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지위이다.

최초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시 그 취지는 피해자의 지위 중 소극적·방어적 지위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처음 도입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약칭)이었는데,¹³⁾ 당시 제도 도입의 배경은 바로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¹⁴⁾

11)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2, 68-69쪽;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권, 한국형사법학회, 1997, 208-210쪽 참조.

12) 동일한 취지로,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6, 245쪽.

13) 2011년 9월 15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이후 2012년 12월 18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성폭력 피해자 일반을 대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규정하게 된다.

14) 강명순 의원안, 최영의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의원들이 통합된 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변호인선임 특례 규정을 두게 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9-12쪽). 한편, 당시 법무부도 관련 연구용역(원혜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법무부, 2011)을 실시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였는데 역시 그 취지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였다(원혜옥, 같은 연구보고서, 2-3쪽, 52-54쪽 참조). 그리고 사실 이보다 한참 전인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피해자보호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자의 소극

사실 성폭력 피해자는 2차 가해로부터 취약한 피해자 중에 하나이고, 아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제도가 소극적·방어적 지위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¹⁵⁾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와는 다른 추가적인 고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본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2.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2.1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

2.1.1 법률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규정된 피해자 변호사

앞서 법률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은 원칙적으로 검사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 변호사 권한 규정을 보면, 검사 이외에 또 다른 사법적 대응체계의 주축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즉,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2항), 법원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법원에서 의견진술권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신문참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히 의견만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여서 더욱 중요하다.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 내에서도 방청석에 앉아야 하고 출석확인도 하지 않으며 손을 들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요구하여도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불허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적 지위 보장방안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한 바 있다(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10쪽 참조).

15) 동일한 견해로, 조미선,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24, 224쪽;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23, 140쪽.

16) 법률신문, “[권리사각지대의 피해자들(상)] 가해자는 변호인 앞세우는데 피해자는 방청석서 발만 동동”, 2024. 8. 24,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23>>, 검색일: 2026. 6. 25. 내용 참조.

둘째,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5항). 소송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권 규정이 있어야 대리가 허용되고, 일반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되는데,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처럼 포괄적 대리권이 인정된다.

셋째,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된 절차개시의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앞의 표에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있음에도 별도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이것은 변호사의 고유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피해자 변호사는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법경찰관이 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제14조 제3항),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 통지받을 권리(제19조 제7항), 임시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조치가 있어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로 후견인 선임시 고지받을 권리(제23조 제3항),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법원이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시 통지받을 권리(제32조 제2항), 아동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결정이 있었던 경우(제36조 제5항), 보호처분변경결정이 있었던 경우(제40조 제4항) 통지받을 권리 등이다. 이러한 통지를 통하여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48조 제2항). 즉,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보조인이 될 수도 있다.¹⁷⁾

한편,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아동복지법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법적 대응체계는 친권상실신고청구(아동복지법 제18조), 후견인선임청구(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및 변경청구(동조 제2항)인데, 청구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로¹⁸⁾ 규정하고 피해자 변호사는 청구권이 없다. 다만, 법무부 매뉴얼은 검사에게 위 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¹⁹⁾

17) 이외에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4항은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변호사 일반이 이러한 열람·등사권을 갖게 되었다.

18) 단, 후견인선임 청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과 학교의 장이다.

이외에 아동복지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등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사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용어를 쓰는 부분도 제21조뿐이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보호절차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 위 조문의 의미와 역할이 모호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변호사는 비록 검사처럼 모든 사법적 대응체계를 아우르는 못하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의견진술권, 포괄적 대리권, 고유권, 통지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상은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체계의 또다른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⁰⁾

2.1.2 소극적이고 저조한 피해자 변호사의 활동 및 그 원인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은 검사 외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피해아동 변호사가 행하는 일은 주로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진술시에 동석하거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²¹⁾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진술권을 행사하는 예는 매우 적다.²²⁾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건수는 당사자인 피해아동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건수보다도 훨씬 적다.

이렇게 피해자 변호사의 활동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 및 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검사

19)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2014, 147-148쪽 참조. 단, 친권상실신고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특별법에 규정된 것 외에도 일반법인 민법 제92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조는 종래 자녀를 청구권자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 10월 개정으로 자녀와 자녀의 친족을 청구권자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가 자녀인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친권상실신고 청구를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대리권인데 본인인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친권상실청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아동복지법에서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상실신고의 청구권을 부여하고 필요적으로 청구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20)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앞의 연구보고서, 350쪽도 동일한 취지.

21)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위의 연구보고서, 247-248쪽 담당 실무자 인터뷰 내용 참조.

22) 법률신문,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대한 단상과 제언”, 2024. 7. 13,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95>>, 검색일: 2025. 6. 25. 참조.

들인데 검사들 자체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여러 절차에 개입하여 폭넓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보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민사절차이므로 청구자가 2회 이상 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참조). 따라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이를 청구한 경우 청구서 제출 외에도 기일 출석을 요하는데 이것은 시간적,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실무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 보호절차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스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속해 있는 경찰, 법원, 보건복지부 등 각 주체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예로,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서는 학대 피해아동 협력 기관 중 법률·사법 분야에 변호사 사무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²³⁾ 2021년 경찰청·보건복지부 공동발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서도 업무수행 주체별 주요 역할 부분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빠져 있다.²⁴⁾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법적 대응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그 도입취지와 운용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여러 의안들이 발의되었는데 대표적인 의안은 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안,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안,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 등 3개였다. 그 중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은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를, 수사·재판 과정상 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각각 도입했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자 변호인선임 특례 규정이 있었으므로 위 발의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지원을 규정하였다. 이 발의안이 제정 아동학대처벌법의 전신이 되었다.²⁵⁾

23)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07쪽 참조.

24)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9쪽 참조.

25) 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1560, 발의연월일 2012. 9. 4.) 제34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참조.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선임 특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제정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위 안홍준 의원 발의안 제안이유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위 발의안을 검토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²⁶⁾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²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규정을 준용한 점, 당시 유력한 견해들²⁸⁾도 도입취지를 성폭력 피해자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조력 도입취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지원 규정 도입 당시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큰 고민은 없었고, 막연히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앞에서 보듯이 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제정 당시부터 성폭력처벌법 등에는 없고 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에게만 고유하게 인정되는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고려가 없었던 것이다.

2.1.3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의 재정립

전술한 것처럼 검사는 법률상 사법적 대응체계의 축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 사법적 대응체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미 법률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아동학대사건 절차에 있어 광범위한 개입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무상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현실적인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권한들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으로 설정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26) 임중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3 참조.

27) 국회사무처, 제31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3 참조.

28)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공청회에서 ‘아동학대도 성폭력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웅석,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 32쪽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직전인 2012년 12월 열렸던 인권옹호 심포지엄에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학대피해아동에게 대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들었다. 2012. 12. 21. 자 법무부·한국법학원 공동주최 제27회 인권옹호 심포지엄: 학대 피해 아동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당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장의 토론회[박지영, “[지정토론회]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저스티스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34-35쪽] 참조.

현행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첫째, 앞서 본 것처럼 아동학대처벌법은 많은 절차에서 복수의 주체에게 절차의 개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주된 권한 행사자로 설정함이 상당하다.²⁹⁾

둘째, 사법적 대응체계 내에서의 각 단계를 맡은 주체들의 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한 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아동학대사건의 구심점으로 설정하면 각 단계의 주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적 대응체계의 연결점

나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연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양 체계의 소통·협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응방안은, 양 체계가 상호협력하에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방안은 이미 오랫동안 학계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³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합체계 구축은 장기 과제이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독립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있어 왔으나,³¹⁾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협력체계 구축의 역할을 검사에게 맡기려고 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못 했듯이 양 체계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29) 실제로, 아동학대 실무자들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원 단계의 절차에 적극 개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앞의 연구보고서, 247-248쪽의 담당 실무자 인터뷰 참조.

30) 이호중,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222쪽;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25-27쪽; 김아름, “[정책제안]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일원적 대응체계 필요”, 월간 공공정책 제151호, 한국주민자치학회, 2018, 69쪽; 최정일, “실효적인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특례법 절차 규정 및 치료사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8, 211-212쪽 참조.

31)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278쪽; 전경숙,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498쪽;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 앞의 연구보고서 396-398쪽;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앞의 연구보고서, 501-502쪽 참조.

소극적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검사의 업무체계 등의 문제로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 대응체계의 연결점 역할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러한 연결점 역할에 있어,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검사는 사법체계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객관의 무도 지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사는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V. 결어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그 제도의 형식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역할은 같지 않다. 단순히 조사, 신문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 피해자의 적극적·공격적 지위의 보장, 즉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만이 갖는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법적 대응체계의 구심점 및 사법적 대응체계와 복지행정적 대응체계의 매개점 역할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피해자 국선변호사 중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작성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는 사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폭력 사건을 위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의 유관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발굴하고,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복지행정주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정자 명부 작성시부터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법무부와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수체계 개편 등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절차에서도 상호 공조해야 한다.

2014년 법무부 작성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은,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초점으로 작성되어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³²⁾ 보건복지

부·경찰청이 공동작성한 2021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빠져 있다.³³⁾ 법무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체 유관기관들이 모여 아동학대사건 진행과정을 전면적으로 살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는 권한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상 개정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유관기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피해자 변호사이므로 기본적으로는 현행처럼 법무부가 관리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개입하는 각 절차는 유관기관별로 전문화시키고, 각 절차에서 국선변호사에 지급해야 할 수당 등 소요비용도 유관기관들이 보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와 같은 조직체의 이점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응 즉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쉽다는 것이다.³⁴⁾ 개별 사건에서의 개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연결짓기 어렵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도 어렵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상호간에 아동학대사건 대응에 대한 비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한 협의체 차원에서 다른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32) 형사절차 이외의 지원에 대해서도 동 매뉴얼 마지막 부분에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권장사항이라는 취치여서 업무매뉴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33)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9쪽 참조.

34) 다른 제도이기는 하나, 외국에서는 ‘진술조력인’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단체 자체가 진술조력인들의 일종의 협의체 구실도 하여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정책 및 관련 이슈에 대응한다. 그 예로, 캐나다의 Communication Disability Access Canada, 이스라엘의 Bizchut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들 수 있다.

35) 협의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과는 독립적인 사단법인이나 통상 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검찰과 업무상 적극 협력·소통하고 있다.

참고문헌

1. 학술지

- 김아름, “[정책제안] 아동학대 예방 위한 일원적 대응체계 필요”, 월간 공공정책 제151호, 한국주민자치학회, 2018, 68-70쪽.
- 김 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23, 127-159쪽.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권, 한국형사법학회, 1997, 199-223쪽.
- 박지영, “[지정토론문]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저스티스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29-38쪽.
- 박혜진,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1-32쪽.
-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5-27쪽.
-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2, 61-113쪽.
- 이태린,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와 피해자의 긴장성 부동화 메커니즘 분석: 아동·가정·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경험에 관한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26, 35-66쪽.
-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6, 243-274쪽.
- _____,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법원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7, 207-238쪽.
- _____,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6-28쪽.
- 전경숙,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475-503쪽.
- 조미선,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24, 223-251쪽.

최정일, “실효적인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특례법 절차 규정 및 치료사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8, 193-215쪽.

2. 자료집

정웅석,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방향 및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관련법」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3, 21-34쪽.

3. 연구보고서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명숙/김지민,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원혜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법무부, 2011.

장다혜/홍영오/추지현/조수정/임혜영,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1)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4. 기타 자료

국회사무처, 제31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호, 2013.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2014.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2021.

임중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3.

[Abstract]

An Essay on Redefining the Role of State-Appointed Attorneys for Child Abuse Victims

Yun, Sohyun*

The state must protect abused children. Given high recidivism rates, state intervention is vital from the initial response to post-case management. Korea's response framework is split into judicial and welfare-administrative systems, featuring various legal procedures and multiple entities authorized to initiate them. Prosecutors are designed as the central hub, horizontally connecting judicial and welfare entities through case management conferences.

In reality, this framework functions poorly due to a lack of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Prosecutors play a limited role due to heavy workloads and their legal duty of objectivity. Furthermore, having multiple entities authorized to initiate procedures blurs accountability, leading to buck-passing or forcing unqualified agencies to take charge.

While the law envisions the state-appointed attorney for victims as another central hub, they fall short in practice. This is because the system was introduced without deep discussion, assuming they would merely mimic sexual assault victim attorneys, whose primary focus is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In contrast, a child abuse victim's state-appointed attorney must serve as a judicial hub and a link to the welfare system to support the child's development. Free from the strict judicial constraints and the duty of objectivity that bind prosecutors, they are highly suited for this role.

To redefine their role, welfare and judicial government agencies must cooperate to establish working systems through manuals and legislative amendments. Additionally, forming an association of prospective state-appointed attorneys should be considered to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ensure a consistent response and build a communication network among relevant agencies.

[Key Words] Child Abuse, State-Appointed Attorney for Victims, Legal Assistance for Victims, Crime Victims,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